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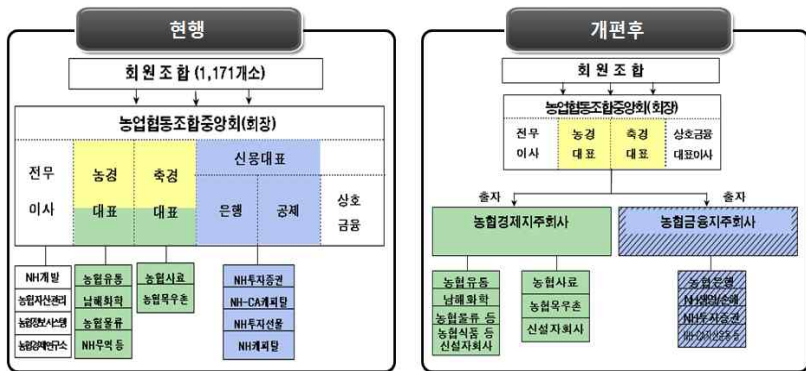
**2011.03.21 미래정책연구실**

※ 본 자료는 지난 3월 11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“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**□ 농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**

**1. 사업분리 방식**

- 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-2지주회사(농협경제지주회사, 농협금융지주회사) 체제로 전환(2012.3.2일 시행)
  - 중앙회와 기존 자회사가 수행 중인 판매·유통·가공 등 경제사업을 묶어 농협경제지주회사 설립(§134의2)
  -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하고, 기존 공제사업은 농협생명보험·농협손해보험으로 전환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에 편입(§134의3)
- 중앙회는 조합 및 농업인 교육·지도 등에 전념토록 하고, 경제 및 금융 사업은 시장 경쟁이 가능하도록 기업경영 체제로 전환
  - 중앙회가 신설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의 지분을 소유하고, 출자자로서 협동조합의 이념을 구현



**2. 경제사업 활성화**

- (중앙회 및 조합의 역할·기능 재정립) 조합원을 위한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농협의 주요 책무로 명문화
    -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, 가공, 유통을 중앙회 및 농협경제 지주회사의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규정(§6②)
    - 조합은 판매활성화를 위해 계약생산, 공동출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, 중앙회에 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(§57의2)
    - 중앙회와 경제지주회사는 조합으로부터 수집 또는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 전문 판매조직 및 시설을 확보토록 함 (§135의2①).
    - 중앙회 및 경제지주회사의 조합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수급 조절 기능 명문화(§135의2②)
  - (경제사업 구조 개편) 경제사업 구조 개편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농협 경제지주회사로의 이관 절차와 시한을 명시하고, 경제지주의 목표가 자체 영리 추구가 아닌 농업인과 조합 이익 증대에 있음을 규정
    -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판매·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고, 경제사업활성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여타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(부칙 §5)
    - 경제지주는 사업 수행을 통해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규정 함(§134의2)
  - (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)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회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·추진 의무를 부과(부칙 §5)
    - 중앙회는 전문기관 연구와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 의견을 들어 조합 및 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, 투자계획, 자회사 설립 및 지주회사로의 편입방안 등을 내용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·추진토록 함
- ※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(중앙회) : 정부, 농협, 농업인단체, 전문가 등

15인 이내로 구성

-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가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·평가토록 하고, 중앙회는 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농식품부에 보고토록 함.
- (경제자본 배분)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가 보유 자본을 배분함에 있어,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토록 규정(부칙 §4)
  - 중앙회는 법 통과 이후 실사를 하여 확정된 자본금의 30%이상을 경제 부문에 우선 배분하기로 함.
- (중앙회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·감독 체계 개편)
  -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 자회사에 대해 중앙회가 지도·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(§142의2)
  - 농식품부에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를 설치하여, 중앙회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(§135의3)
    - ※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(농식품부) : 농업인단체 대표, 유통 전문가, 중앙회 임직원, 일선 조합장 등으로 구성
  - 중앙회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업경제대표·축산경제대표 성과평가시 판매활성화 사업평가를 반영토록 함.

### 3. 금융사업 경쟁력 제고

- (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) 중앙회의 신용사업, 공제사업 등을 분리하여 금융사업의 총괄 조직으로서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 (§134의3)
  - 신설 금융지주회사는 「금융지주회사법」 §3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
    - ※ 농협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은 금융지주 체제로 기 전환 (우리 '01, 신한 '01, 하나 '05, 국민 '08 등)
- (농협은행 신설)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하되, 농협법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유지하여, 현행대로 농업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함(§134의4).
  - 일반 은행업무 외 농업인 및 조합에 대한 자금 대출, 조합 및 중앙회의

사업자금 대출 등 농업금융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

- 농업인의 농축산물 생산·유통·판매 자금 및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, 우대 조치할 수 있도록 함.
- (농협보험) 농협공제를 보험으로 전환하되, 이에 따른 혼란이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 및 특례를 규정
  - 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고, '09.10.28일 현재 조합과 중앙회 판매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은 「보험업법」 §4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(§134의5)
    - ※ 자동차보험은 별도 허가 필요(§134의5③)
  - 조합과 농협은행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 의제하고, 조합의 농협 보험 취급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을 5년간 유예(부칙 §14)
    - ※ 단, 자산 2조원 이상 조합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규정 중 25% 료를 5년간 단계적으로 적용
      - (방카슈랑스) 은행이 **보험회사**와 연계해 보험성격이 짙은 상품을 개발, 판매하는 것으로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제휴와 업무협력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

### 4. 명칭사용료 제도 도입

- 사업 분리 이후에도 중앙회의 산지유통 활성화 등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명칭사용료 제도 신설 (§159의2)
  - 중앙회는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 법인(농협은행 등)에 대해 영업 수익 또는 매출액의 2.5%내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
  - 명칭사용료 수입은 타 수입과 구분관리하고,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

### 5. 정부지원

- (자본 지원)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금은 우선 농협이 자체 조달하고,

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

- 개정안에 이를 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, 국회 상임위에 보고 및 심의 절차를 명시(부칙 §3①)
- 정부는 자본 지원시에도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(부칙 §3②)

○ (조세 특례)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추가 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

-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(법인 설립 등기 등록세, 신설 법인 재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·등록세 등 중앙회 추산 8,000억원) 면제
-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 수준 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함.

### 6. 조합 선거제도 개선

○ (조합장 동시 선거 실시) 조합마다 각기 다른 일선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 실시토록 하여 부정·혼탁 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거 관리의 효율화 도모(부칙 §11)

- '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(15.3.11)에 전국 동시 선거 실시
- 이를 위해 '09.03.22일부터 '13.3.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'15년 3월 20일까지로 조정
- 임기 조정으로 임기가 단축된 경우에는 연임제한 횟수(2회)에 미반영

○ 공정선거 풍토 정착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조합 선거 제도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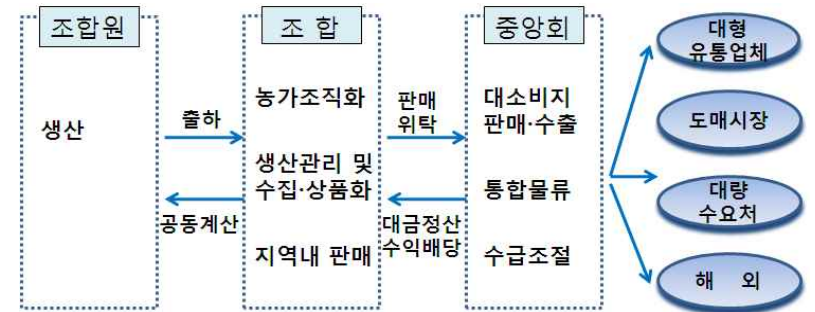
- (조합장의 축의·부의금품 제공 제한) 조합의 경비로 축의·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고,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토록 함(\$50의3).
- (모든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) 조합장을 대의원회 간선제로 선출하는 경우와 품목조합의 경우에도, 조합장 선거를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구·시·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토록 함(\$51④).

- (선거운동 방법 개선) 소형 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, 도로·시장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(\$50④)

## □ 농협법 개정 기대요과

### 1. 경계사업

○ 중앙회가 산지 유통에 직접 참여, 공동출하, 공동판매, 공동이익에 충실한 전국적 농산물 판매조직화 실현



○ 분산된 농협의 농축산물 출하 채널을 중앙회로 일원화하여, 시장 교섭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 제고

<전국단위 공동브랜드 K-멜론 사례>

- 전국 1,287명 농업인과 23개 농협, 12개 시군연합사업단이 참여
- ERP시스템 도입, 생산기법 통일, 파종·출하 시기 조정, 공동선별·공동계산·공동브랜드
  - 중앙회로 출하창구를 단일화, 일반상품 대비 28% 높은 도매가격 형성,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맛 좋은 상품을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

○ 중앙회 주도의 농축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으로 조합 부담 경감

- 현재 경제 자본이 2,715억원에 불과하여 필요한 자금은 신용 및 상호금융

에서 차입하고 있으나, 사업 분리이후에는 보유자본의 30%이상의 경제사업 자본 확보

- 농산물 도매물류센터 건립, 공관장 통합거래시스템 구축, 식품산업 진출,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등 중앙회의 소비지 및 산지 투자 증가 (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으로 구체화)
- 중앙회의 투자 확대 및 조합과의 공동사업 참여로 조합의 경제사업 부담 경감

## 2. 신용사업

- 시중은행 이상의 수익을 창출, 조합과 농업인에 환원
  - 금융지주 수익 증가에 따라 중앙회의 명칭사용료 및 배당수입 증가
  - 금융지주의 경쟁력 제고는 중앙회(궁극적으로는 조합원)의 미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

<국내은행 총자산/당기순이익 비교('10.9월기준)>

구분	농협	국민	신한	우리	하나	기업
총자산(조원)	193	275	238	247	159	171
당기순이익(억원)	2,066	2,303	14,547	9,196	7,169	10,482